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나드리콜 콜장비 구매 및 설치
- 발주기관 : 대구시설공단(이동지원팀)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오토피온
- 대상장비 : 차량용 콜장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대상장비에 대하여 대구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으로서, (주)오토피온(이하 “공급업체” 라 한다)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이하 “낙찰자” 라 한다)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본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하여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공급업체”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또는 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업체”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단”과 “공급업체”가 협의하는 금액(금7,500,000원,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공급업체”는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급업체”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9년 10월 24일

발주기관 : 대구시설공단 (인)



공급업체 : (주)오토피온 (인)

